

WTO體制와 우리의 對應

김 지 홍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법인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머 리 말

1995년은 GATT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된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남달리 높은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WTO체제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제조업 교역에 치중해온 GATT와는 달리 WTO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해결절차도 신속하게 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존의 규제관행을 재검토하고 WTO체제에 맞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기존의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국제간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쟁력 제고에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김지홍 교수가 집필한 본 보고서에서는 UR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WTO체제하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간추려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및 기업들의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1995. 7.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 공 일

目 次

요 약	9
I. 서론	13
II. UR협상 타결과 WTO체제의 성립	18
1. UR협정의 의의	18
2. WTO의 설립	19
가. WTO의 조직	19
나. WTO의 의사결정 방식	21
3. UR협정의 전반적 효과	22
가. 농산물 분야	23
나. 제조업 분야	24
다. 서비스 분야	25
라. 지적재산권	27
마. 규범의 강화	27
바.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28
사. 분쟁해결절차	29
III. WTO체제와 산업별 대책	30
1. 농산물 분야	30
가. 개 요	30
나. 대 책	31
2. 제조업 분야	32
가. 개 요	32
나. 업종별 대책	32
3. 서비스 분야	34
가. 개 요	34
나. 부문별 대책	34

IV. WTO체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37
1. 사업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37
2. 사업의 집중화	38
3.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	38
4. 전략적 제휴에의 적극적 참여	38
5. 국제분업의 적극적 참여	39
6.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에 대한 대비	39
7. 반덤핑과 보조금 문제에 대한 대처 노력	40
8.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	40
9. 인적자원 개발	41
10. 정보의 확보	42
참고문헌	43
Abstract	44

圖表 目次

〈도표 1〉 UR협상 추진체계	14
〈도표 2〉 UR협상의 주요 의제	15
〈도표 3〉 WTO의 구성	20
〈도표 4〉 지적재산권의 분류	26
〈도표 5〉 쌀 관련 지표	30
〈도표 6〉 서비스부문 양허 수준	34

요 약

UR협상타결과 WTO 체제의 성립

- GATT체제의 8차협상으로 1986년 시작된 UR협상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으로서, 대외개방적 운용이 불가피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동경라운드 이후 제2차 석유파동과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확대,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수출신장은 국가별 무역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보호주의,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GATT체제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
- 일부 선진국들은 상품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국제수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자간 방식에 의한 새로운 규범 마련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항이 모두 포함된 15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GATT 회원국 105개국 참여) 되었다.
- UR협상의 기본목표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GATT 체제의 강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마련을 통하여 '9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과 더불어 1990년까지 최종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 UR협상 타결의 진정한 의미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향후 안정된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세계교역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UR협정은 향후 세계교역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과거의 GATT가 단순한 국제협정이어서 구속력이 약하였다는 점을 개선하여 UR협정에서는 무역에 관한 UN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 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한편 UR협정은 기존의 GATT가 다루지 못하였던 섬유, 농산물, 동경라운드 협정 등을 다자간체제로 복귀시키고,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도 포괄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한 것이다.

- UR협정의 소득 및 무역창출 효과에 대하여 OECD는 전세계적으로 UR협정 발효후 10년간 약 2,000억 달러의 추가적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ATT에서는 연간 7,500억 달러의 무역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TO 체제와 산업별 대책

1) 농산물 분야

- 예의없는 관세화를 통한 포괄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 협상결과는 한국의 농업과 농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쌀의 수입개방은 농민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주어 향후 移・脫農現象이 예상된다. 특히 농업종사자들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UR협상의 타결은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농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농업을 보호중심에서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UR농산물체결에 대한 정책은 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정책은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상, 프로그램개발, UR협정에 따른 이농과 탈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분업화에 알맞는 작목체계의 조정과 생산성증대

를 통하여 한국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2) 제조업분야

- UR의 관세인하이행기간이 끝나는 1998년에 평균관세율을 12.2%까지 인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3년 현재 평균관세율이 8.9%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인하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에서 수출증대나 국내생산물 사용증대를 위한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해야 하며 경과기간 중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3) 서비스분야

- UR서비스 협상은 현재 완전히 종료되지 못하였으며 協定文制定 협상과 양허협상을 계속하기로 하고 있다. 협정문협상은 자격인정,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문없이 계속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 양허협상에서는 상업, 건설부문 등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하여 양허가 완료된 상태이고 금융, 해운, 기본통신, 노동력이동에 관하여 앞으로 약 2년간 협상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문화, 오락서비스 등은 양허를 하지 않았으나 교육시장의 경우 한·미간의 쌍무협정에 의하여 1996년부터 전문교육시설의 개방이 시행될 것이다.
- 회계 및 세무서비스 같은 사업 서비스는 국내의 자격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국내기업과 제휴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외국의 선진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하며,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상호인정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자격

이 외국에서도 인정받도록 하고 자격미달의 개도국기업이 무분별하게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관광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도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WTO체제와 企業의 대응전략

- WTO의 설립은 국가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농산물 및 서비스교역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 단위의 시장이 사라지고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기업의 경쟁자를 한 국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섰으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 최고 경영자의 사고방식 전환,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한 사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다국적기업들보다 기업의 경쟁우위원천이 부족하므로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기업의 자원을 전략적 우위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략적 제휴와 국제분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에 대한 대비, 반덤핑과 보조금문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노력과 함께 인적자원의 개발,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구도를 겨냥하여 GATT체제에 대한 8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1986년에 시작되었다. UR협상은 동구권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과 함께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으로서 대외개방적 운용이 불가피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동경라운드 이후에도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저성장기로 돌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경제여건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미국의 산업경쟁력 저하로 인한 무역수지적자의 확대 및 일본과 대만,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NICs)의 수출신장은 국가별 무역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GATT 체제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섬유와 철강 등 사양산업 보호를 위해 GATT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 소위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를 남용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양자간 압력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을 선호하였고 이에 따라 윌리암스버그 경제정상회담(1983년 5월)에서 GATT 체제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다자간 협상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GATT 주관하의 제 8 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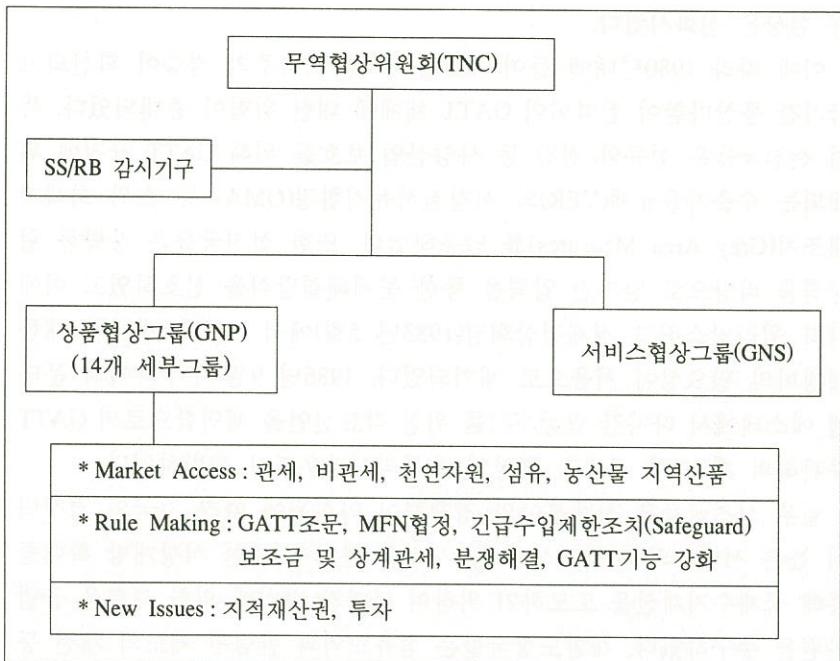
일부 선진국들은 상품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국제수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자간 방식에 의한 새로운 규범 마련을 추구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섬유교역과 반덤핑 제도의 개선 등 개발도상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협상의제에 포함시켜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항이 모

두 포함된 15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GATT 회원국 105개국 참여)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섬유와 농산물, 열대산품, 자연자원 등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다수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신흥공업국들도 미국과 EC 등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압력을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무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협상의 기본목표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GATT 체제의 강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New Issues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마련을 통하여 '9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과 더불어 1990년까지 최종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도표 1〉 UR협상 추진체계



UR협상은 1986년 우루과이 Punta del Este 선언에 의거하여 무역협상위원회(TNC), 상품협상그룹(GNG), 서비스협상그룹(GNS) 등 UR협상

기구를 설치하였다.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는 UR 협상 전반을 관장하는 상급기구로서 GNG 및 GNS는 협상진행상황을 TNC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품협상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회의는 상품분야 무역협상을 관장하며, 1987년 1월 GNG 산하에 14개분야 협상그룹 회의를 설치하였다.

서비스협상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회의는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 제 2부에 해당하는 서비스분야 협상을 관장하였다. 1990

〈도표 2〉 UR 협상의 주요 의제

협 상 그 룹	협 상 목 표
관 세	관세 인하 및 철폐와 관세 양허범위의 확대
비 관 세	수량제한을 포함한 각종 비관세조치의 완화 및 철폐
천연자원산품	천연자원산품의 교역자유화
섬 유	섬유류교역의 GATT체제에의 통합 및 교역자유화
열대산품	열대산품의 교역자유화와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농 산 물	수입장벽, 보조금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의 완화를 통한 농산물교역 자유화
GATT조문	현존 GATT조문의 재검토
긴급수입제한	GATT기본원칙하에 조치의 대상 범위, 발동 기준, 발동 기간 등에 관한 포괄적 협정 체결
MFN협정	동경라운드시 체결된 협정의 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규정의 개선
분쟁해결절차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절차 및 규정의 개선 강화
지적재산권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규범 마련
무역관련투자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오는 투자조치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GATT기능강화	회원국 무역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각료참여 확대, 국제 금융, 통화기구와의 연계 강화
서 비 스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통한 다자간 규범 마련
보호조치동결 및 철폐	UR협상기간 중 GATT에 위배되는 새로운 보호조치의 도입금지 및 기존 보호조치의 점진적 철폐

년 초에는 각 서비스 분야별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산하에 실무작업단을 설치하였다.

SS/RB 감시기구는 협상관련 사항에 대한 각국의 동결 및 복귀(Standstill 및 Roll back)에 대해 감시하였다.

이와 같은 협상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UR협상은 상품시장개방과 관련한 의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를 협상에 추가함으로써 협상의 의제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였다. 그 결과, 그간 GATT 체제하에서 많은 예외를 인정받아온 농산물교역이 협상대상으로 부상되었고, 주로 쌍무협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교역도 일반적 규범 제정을 목표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UR협상은 현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GATT협상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하였는 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협상의제에 포함시켰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섬유쿼타제도, 각종 회색지대조치 등 보호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폐지를 추구하였다. 한편 농산물 수출국들은 그간 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되어온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의제에 포함시켰다.

둘째, 이와 같은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UR협상에서는 협상의제를 광범위하게 선정함과 동시에, GATT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GATT 규율을 대폭 정비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등이 모두 의제에 포함되었다.

한편 각 의제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농산물과 같은 분야에서는 단순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EC 등 선진국 간에도 서로 이해가 상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협상의 타결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 타결방식이 아닌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어느 한 부문에서의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를 받아

들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부문만을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게 한 것이다.

II. UR협상 타결과 WTO체제의 성립

1. UR협정의 의의

UR협상 타결의 진정한 의미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과거의 GATT체제는 느슨한 국제협정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으나 냉전구조라는 특이한 국제정치상황과 미국경제의 절대적 우위 등으로 보완이 되어 그런대로 세계교역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경제의 절대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EC와 일본의 경제력이 급상승하여 경제적 다원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대국 간의 빈번한 무역마찰이 예상되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국제규범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교역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UR협정은 향후 세계교역질서를 안정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의 GATT가 단순한 국제협정이어서 구속력이 약하였다는 점을 개선하여 UR협정에서는 무역에 관한 UN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한편 UR협정은 기존의 GATT가 다루지 못하였던 섬유, 농산물, 동경라운드 협정 등을 다자간체제로 복귀시키고,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도 포괄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주의화 추세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NAFTA, APEC, AFTA(ASEAN국가 간의 무역협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UR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이러한 지역주의화 추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 WTO의 설립

가. WTO의 조직

UR협정으로 인하여 가장 가시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이다.

〈도표 3〉에서 보듯이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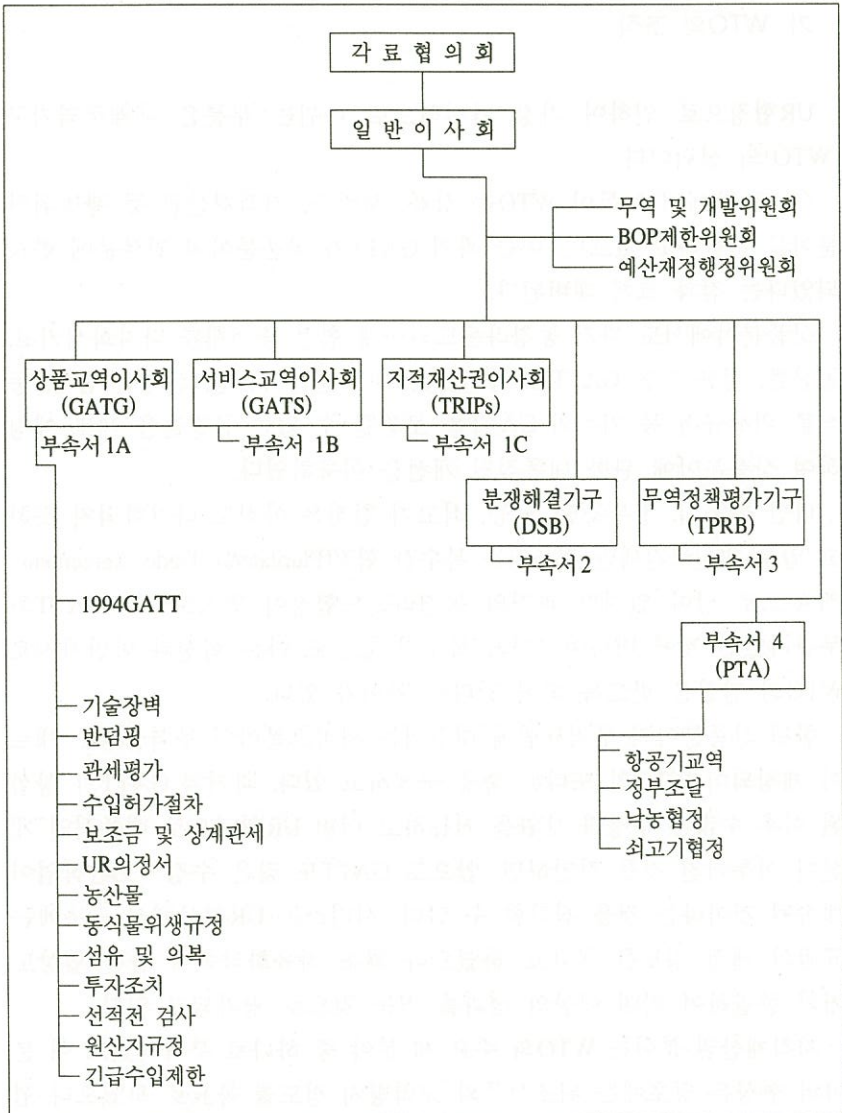
상품분야에서도 과거 동경라운드의 9개 협정 중 5개를 다자화시키고, 농산물, 섬유 등을 GATT로 복귀시켰으며,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동식물 위생규정 등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새로 제정하여 상품분야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을 이룩하였다.

다만 항공기, 정부조달, 낙농, 쇠고기 협정은 아직도 다자화되지 못하고 일부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의 동경라운드협정이 법적으로는 GATT와 무관하였던 것에 비하여 4개의 복수간 협정도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WTO의 관할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상품분야의 무역규범에 대칭되는 서비스분야의 무역규범도 새로이 제정되어 WTO의 또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과거의 GATT가 창설된 이후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이번 UR협정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GATT도 많은 수정·보완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비스는 UR협상에서 당초에는 규범의 제정 정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초 자유화약속에 관한 협상도 거의 종결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WTO의 주요 세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되었고 이 분야의 협상은 당초에는 위조상품의 교역방지 정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괄범위가 확대되어 신지적재산권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협정은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협정은 아니며, 기존 국제협약에 추가하는 국제협약 플러스의 형

〈도표 3〉 WTO의 구성



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WTO는 분쟁해결절차를 통일하여 체계성을 갖추고 또한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고 교차보복을 인정하는 등 실효성도 증대시켜 WTO체제의 유

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무역정책평가기구(TPRB)가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게 될 것이다.

나. WTO의 의사결정 방식

WTO는 기본적으로는 과거 GATT체제와 같이 합의제(consensus)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사항 또는 협정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 등 중요한 수정변경의 경우에는 단순한 과반수 표결이 아닌 2/3 또는 3/4 이상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조문 중 최혜국대우와 관련되는 조문과 관세양허에 관하여는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지 않는 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협정이나 지적재산권협정 조문 중에서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사항과 서비스협정의 제1, 2, 3부(서비스의 정의, 일반적 의무 및 구체적 의무)에 대하여는 회원국 2/3 이상의 수락으로 수락회원국에 게만 수정 조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단 회원국 3/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원국의 수락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를 탈퇴하도록 하고 있어 WTO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한편 회원국의 의무나 권리상에 변동이 없는 기타 조문의 변경은 회원국 2/3 이상이 수락하면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역시 WTO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계속 합의제를 유지하여 개정이 어렵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안의 채택에 관하여도 90일 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합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신속성이 보장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회원국 3/4의 동의가 있으면 최혜국대우 조항, 분쟁해결 절차 등의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정이 가능하며 이를 수락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WTO를 탈퇴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WTO에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GATT가 단순히 합의제에만 의존하였던 것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UR협정의 전반적 효과

UR협정의 소득 및 무역창출 효과에 대하여 OECD는 전세계적으로 UR협정 발효후 10년간 약 2,000억 달러의 추가적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ATT에서는 연간 7,500억 달러의 무역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협정에 따른 총체적인 평가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었으나 선진국에게 약간 유리한 방향으로 UR협정이 타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섬유 및 의복, 분쟁 해결절차 등에서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유리한 성과를 보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하여 월등 유리한 성과를 보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어 그 평가가 어려우며,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무세화 또는 관세조화를 통하여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관세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개도국은 기존 관세율이 높아 절대적인 면에서는 개도국의 관세인하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UR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미국과 EC의 주도하에 반덤핑 규정이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수정이 이루어진 점과 서비스분야에서 선진국이 계속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협상시한을 연장한 점 등이 선진국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였다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UR협정은 다자간 교역 체제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하여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완하시키며 세계경제의 활성화 및 교역질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세화 및 관세조화로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4년 내에 폐지하기로 한 것 등은 많은 무역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섬유와 농산물에서도 모든 수입제한조치가 폐지되고 관세만이 유일한 장벽수단으로 남게 되어 무역장벽이 완화되었다.

그동안 각국에서 보호무역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등의 명료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향후 남용이 억제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공정한 교역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국제교역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별도의 규범이 제정되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개방약속까지 이루어져 이들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교역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 농산물분야

농산물 부문은 국경조치, 국내보조금 감축, 수출보조 감축의 세 분야로 나뉘어 협상이 진행되었다. 국경조치에 관하여는 수량제한 등의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관세만을 유일한 보호수단으로 하는 예외없는 관세화와 지나치게 높은 관세로 수입량이 미미할 경우에는 최소시장접근(Minimum Access)을 허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쌀에 대하여 관세화 유예기간을 인정받음으로써 약간의 예외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협상기간 동안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였던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는 모두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하였다.

한편 모든 국내보조금을 합산하여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감축대상 보조금은 선진국의 경우 모두 총량화하여(AMS) 이를 2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2/3수준인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허용보조금의 경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서비스정책과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 그리고 개도국 우대조치로서의 허용보조금이 인정되며 그 액수는 정부서비스정책의 경우 6,687억 원이며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는 10억 7천만원, 그리고 개도국우대는 123억원이다. 수출보조금은 금액과 물량기준으로 각각 36%와 21%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산물교역은 특히 과거 GATT에서 사실상 예외조치를 인정받아 GATT규율 밖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UR 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농산물교역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식량수출국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수출국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함으로써 식량수입국의 이해도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접근분야에서 농산물협상 전 품목에 대하여 관세화를 양허하였다. 기존의 수입제한 품목은 기준연도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을 관세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쌀의 경우에는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시장접근만을 인정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UR협정이 발효되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쌀시장의 3%에서 5%까지 수입을 하고 2005년부터는 무조건적인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제조업분야

(1) 공산품의 관세인하

공산품의 관세인하는 제 7차 동경라운드와 유사한 가중평균관세율 1/3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1993년 7월 동경의 4차회담에서 무세화 및 관세조화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관세인하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무세화는 철강, 건설장비, 농업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등의 품목에 적용하기로 하고 고관세품목의 하향 평준화(5% 내지 6.5%로 조화시킴)를 위한 관세조화는 화학제품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직 세부 품목에 관한 관세율협상이 종결되지는 않았고 무세화품목에 대하여도 종이, 목재, 완구를 포함시키는 협상이 진행중이며 전자, 과학장비, 비철금속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협상중이고, 일부 섬유품목에 대

하여도 추가인하 협상중이다.

(2) 섬유 및 의복

섬유교역은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하여 국별쿼타제도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 UR섬유협정으로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수량규제조치의 총 51%를 폐지함으로써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1998년 1월 1일까지는 1990년 기준 총수입량의 17%를, 2002년까지는 18%를, 2005년 1월 1일까지는 51%를 WTO에 복귀시킨다는 내용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 모든 섬유관련 규제는 섬유교역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ard)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통제를 받게 된다. 특히 수입증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이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발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TMB에 통고해야 하며, TMB는 피해판정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 서비스분야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하에서 UR/서비스 협상은 세계 서비스교역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규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반협정, 분야별 부속서, 각국의 시장개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분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분야이기는 하지만 처음 협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제정된 서비스 협정은 최혜국대우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최혜국대우 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국내규제제도, 자격인정제도, 보조금, 긴급수입제한, 정부조달 등이 모두 후속협상으로 남겨졌다.

UR/서비스협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향후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확대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협상의 일부인 양허표에 기재된 규제조치 이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Negative List System)되어 해당 서비스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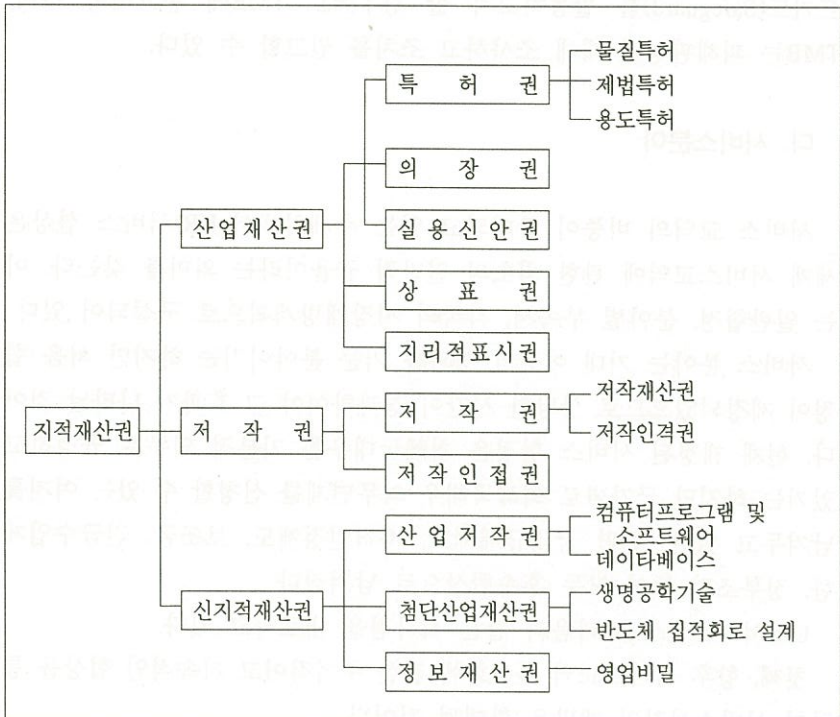
규제수준은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산업 인가, 자격요건 등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균형있는 자유화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추후 협상과정에서 규제 및 자격인정에 관한 국가간 조화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최혜국대우가 기본적 의무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쌍무적 협상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회원국에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다섯째, 외국 서비스기업의 상업적 주체가 인정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 노동력이동에 대한 국제규범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도표 4〉 지적재산권의 분류



라. 지적재산권

이 분야는 선진국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초의 위조상품방지라는 목표보다 범위가 확대된 포괄적인 협정을 제정하였는 바 개도국이 UR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yright) 및 신지적재산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의장권, 상품권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한다. 한편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copyright)과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첨단기술 및 전자, 정보산업관련 첨단기술 등의 첨단산업재산권과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산, 제조, 기획, 영업 등의 정보가 상품화됨에 따른 정보재산권(proprietary information)을 포함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기존 국제협약 플러스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여권,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저작인접권의 보호, 지리적 표시권의 인정, 집적회로배치 설계권의 보호 등이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영업비밀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마. 규범의 강화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제도 등이 주로 선진국에 의하여 남용되어 온 점을 중시하여 이번 UR협정에서는 관련협정을 명료화, 객관화함으로써 남용의 여지를 축소시켰다. GATT 제6조의 1항은 '채약국은 외국의 상품이 정상적인 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의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는 이 덤핑은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

UR협정에서는 덤핑마진이 경미하거나, 덤핑수입량 혹은 그로 인한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경우 조사는 즉시 종

료되어야 한다는 최소개념(de minimus)을 인정하였다. 즉,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단일시장에서 3%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거나 세계전체시장에서 7%미만일 때, 반덤핑 제소가 면제되며, 덤핑마진은 정상가격대비 2%미만일 경우 면제된다. 덤핑마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정상가격의 인정범위 또한 확대하였으며, 구성가격 산정에서 실제자료를 인정하는 등 객관성이 제고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소멸은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심사를 통하여 반덤핑조치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관세부과일 혹은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의 경우에는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과 같은 회색지대조치가 협정발효 후 4년 이내에 모두 폐지되는 등 교역자유화가 추구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선별적인 수입제한조치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국제무역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로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번 UR협정에서는 각국이 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폐지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보조금의 지급이 무역상대국의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금지보조금이라 하여 협정발효 후 3년이내에 폐지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허용보조금과,

셋째, 기타 상계관세부과가 가능한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구분한다.

한편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사.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었는데 비하여, WTO체제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가 모든 분쟁해결규정 및 절차를 관장한다.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패널의 결정 및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DSB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consensus)에 의한다.

패널에서는 패소국에 의해 상소가 가능하도록 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상소기구는 DSB에 의해 설립되며 7인으로 구성하되 한 사건에 대하여 3인씩 교대로 상소업무를 담당한다.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지명될 수 있다. 일방 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권고 및 결정사항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복할 수 있는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을 인정함으로써 보복조치의 실효성을 증대시켰고, 각국은 패널이 협정위반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Ⅲ. WTO체제와 산업별 대책

1. 농산물분야

가. 개요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포괄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 협상결과는 한국의 농업과 농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쌀의 수입개방은 농민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주어 향후 移農 및 脫農現象이 예상된다. 특히 농업종사자들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UR협상의 타결은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농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농업을 보호중심에서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업의 주축이었던 쌀농사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쌀소비는 1970년대에는 136.7Kg이던 것이 1993년 현재 110.2Kg으로 줄어들었고 총소비량의 규모도 1979년의 676만 톤에서 1992년에는 493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중 인구가 613만 명이나 증가한 것을 고려

〈도표 5〉 쌀 관련 지표

	농가인구 (만명)	쌀재배면적 (ha)	국내생산 (만톤)	1인당소비 (kg)	총인구 (만명)	총소비 (만톤)	초과공급 (만톤)
1981	1,000	122	506	131.4	3,872	509	-3
1981-87	895	123	545	129.1	4,029	520	25
1988-92	650	123	565	118.5	4,286	508	7
1993	613	115	525	110.2	4,405	485	40

註: 총소비 = 1인당 소비량 × 총인구

資料: 농림수산부 주요통계, 1993.

할 때 쌀의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농가인구수는 지난 1981년에 1,000만 명이던 것이 1992년에는 571만 명으로 429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농가인구의 연령층도 고령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P)은 1981년에 1,734달러이던 것이 1992년에는 6,749달러로 4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도시민의 소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이하로,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0%이하로,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이하로 크게 저하되고 있다.

나. 대책

UR 농산물협정체결에 대한 정책은 장기 및 단기정책으로 구분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정책은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상, 프로그램 개발, UR협정에 따른 이농과 탈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분업화에 알맞는 작목체계의 조정과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한국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농업보조금이 감축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지원정책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차보상이나 농업기계화 지원 등이 감축대상이 될 경우 농민 스스로의 농업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필수적인 영농규모의 확대 및 농업기계화 작업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허용되어 있는 국내 보조정책 중 재해구호, 작물보험, 의료 및 교육지원, 탈농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도입하여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작목체계는 부존자원의 여건상 토지와 인력이 적게 들고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며 작목체계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쌀이나 쇠고기 등은 영농규모의 확대, 기계화와 더불어 품질을 고급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쌀 생산원가는 80Kg당 73,128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90%에 이르는 한계답의 생산원가인 115,760원을 합한 비용이다. 한국은 경지정리가 되고 수리시설이 완비된 논 64만 ha를 가지고 있는 바 여기에

서의 생산비는 상당히 낮을 것이고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그 외의 수리불안전담은 다른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한국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농과 같은 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력을 가진 투자가를 농업에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에서의 수익성이 타 분야와 동등해질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제조업분야

가. 개요

UR 공산품분야에서는 각 회원국의 관세율을 1985년대비 33%인하하고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이 지난 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중화학분야의 관세화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수입증가도 예상된다.

UR의 관세인하이행기간이 끝나는 1998년에는 평균관세율을 12.2%까지 인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3년 현재 평균관세율이 8.9%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부문에서 수출증대나 국내생산품 사용증대를 위한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거나, 경과기간 중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나. 업종별 대책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았

던 EU와 캐나다, 그리고 다른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산업의 경우 무관세화와 함께 반덤핑 보복조치의 남용방지 등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도 관세 인하조치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는 우리 기업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철강의 경우 관세철폐와 반덤핑조치 남용방지 등으로 수출시장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확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산업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반덤핑 규제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적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UR타결은 국내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섬유 쿼터를 운용해 온 MFA를 2005년까지는 전체 쿼타량의 51%를 자유무역체제로 복귀시킴에 따라 선진국시장에서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이전까지 MFA체제 하에서 유리한 쿼터를 받아오던 우리로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 의한 수출시장의 잠식이 예상되며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품목의 개발로 인한 경쟁력 증대는 한국기업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낮은 기술능력과 핵심부품에 있어서 대일의존도의 심화 요인 때문에 수출증대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산기계우대조치와 관련된 각종 정부의 지원이 UR협정에서는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국산기계의 수요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중장비와 의료기기 및 농업장비에 대한 무관세화는 기계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3. 서비스분야

가. 개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GNP와 총고용의 각각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에서 세계 10위권의 교역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UR서비스 협상은 현재 완전히 종료되지 못하고 있으며 協定文 制定 협상과 양허협상을 계속하기로 하고 있다. 협정문 협상은 자격인정,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문없이 계속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도표 6〉 서비스부문 양허 수준

양 허 수 준	부 문
양 허 완 료 부 문	사업, 건설, 유통, 부가통신, 환경,관광, 陸運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양허협상계속부문	금융, 해운, 기본통신서비스, 노동력이동
미 양 허 부 문	교육, 의료, 문화, 오락서비스

양허협상에서는 사업, 건설부문 등 8개분야 78개 업종에 대하여 양허가 완료된 상태이고 금융, 해운, 기본통신, 노동력 이동에 관하여 앞으로 약 2년간 협상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문화, 오락 서비스 등은 양허를 하지 않았으나 교육시장의 경우 한·미간의 쌍무협정에 의하여 1996년부터 전문교육시설의 개방이 시행될 것이다.

나. 부문별 대책

(1) 사업서비스

회계 및 세무서비스는 국내의 자격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직접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국내기업과의 제휴를 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기업은 외국의 선진기법을 전수받

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상호인정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자격이 외국에서도 인정받도록 하고 자격 미달의 개도국기업이 무분별하게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건설서비스

건설서비스는 1994~9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건설에는 외국업체의 진출이 예상된다. 시장개방에 따르는 국내시장의 잠식은 예상되나 부실공사 시비와 같은 국내 건설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선진국의 고도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의 진출이 예상되나 역으로 국내업체의 외국정부의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내기업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3) 유통서비스

1996년부터 연쇄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내의 영세 편의점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의 제조업체나 무역업체가 유통업을 겸한 진출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국내유통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의 유통단지화와 유통정보화, 그리고 물류표준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관광서비스

관광서비스는 1991년부터 개방되어 있으며 호텔 및 음식점업도 이미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부문은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방을 약속하였고 따라서 UR협정으로 인해 추가 개방압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1~2년에 걸친 개방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은행의 경우는 이미 많은 외국은행이 국내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R협정으로 인해 오히려 외국은행에 대한 혜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은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해외정보의 수집·분석 및 새로운 금융기법 습득을 위한 연구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개방이 연기되어 왔으나 UR협상으로 인해 국내시장의 잠식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증권업계는 다른 증권사와의 온라인전산망 설치와 투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효율성 제고방안과 외국증권사로의 과다한 인력스카우트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현재 시장개방의 정도가 높음에도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현재 취약한 경영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방에 따라 경영구조가 악화되어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보험업계는 새로운 상품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거래약관 개선과 같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체인력 양성으로 인력의 정착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금융업체의 경직성과 같은 경쟁력 약화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및 지나친 규제로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에 앞서 부실채권의 정리 및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WTO체제와 기업의 대응전략

1. 사업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WTO체제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 수립을 의미한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운송 비용 및 통신비용의 감소와 소비자들의 국가간 지역간 기호의 동질화 현상이다. 또한 WTO의 수립은 국가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농산물 및 서비스교역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 단위의 시장이 사라지고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기업의 경쟁자를 한 국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섰으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서 한국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기업의 성장배경 중 하나인 정부보조문제는 UR 타결로 인하여 이제는 어려워졌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의 거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세계경제조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둘째, 세계적인 무역장벽 감소의 상황에서 기업은 기업의 각 부가가치창출부분을 가장 효율적인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경쟁적 우위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내의 다른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과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셋째, 세계시장이 동질화됨에 따라 기업은 글로벌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시장에 표준화된 제품을 공급하여 기업은 R&D와 생산,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의 집중화

국내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다국적기업들보다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기업의 자원을 전략적 우위분야에 집중(focus)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재벌계열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각화는 기업의 수익흐름을 안정시키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업분야에서 기술과 자본에 앞서는 외국의 우수한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비경제적이 될 것이므로 각 기업들은 우위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기존의 국내 유통채널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들이 자체적인 유통채널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기업과의 합작 또는 독자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시장구조의 파악을 통해 국내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내고 이에 따른 유통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외국기업보다 높은 전략적 우위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통산업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

4. 전략적 제휴에의 적극적 참여

20세기 후반의 세계경제환경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소비자요구의 국가간 유사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투자규모의 증대와 복합화로 어느 한 국가의 시장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경쟁개념을 범세계적 경쟁개념으로 변화시킨 글로벌경쟁자들의 출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계시장이 하나의 시장과 같이 세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업간 제휴를 통하여 공동 R&D, 공동 마케팅, 그리고 자사가 갖지 못한 부가가치부문을 타 기업과 제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경쟁할 것이다. 이러한 제휴에 가담한 기업과 가담하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5. 국제분업의 적극적 참여

기업의 생산공정(Manufacturing Process)의 세계적 분업화 및 이동이 발생하며 구매(Sourcing)가 국제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하도급(Subcontracting)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自社의 핵심적인 경쟁우위기능만을 기업내부화하고 기타 기능을 하도급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외부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R&D, 디자인 등의 기능이 앞선 외국기업 합작투자 또한 하도급을 통해 마케팅 또는 단일공정만을 전문화하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화 및 분업 현상은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하여지며, 전문화된 중소기업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에 대한 대비

조세정책의 국가간 차이가 국제무역과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기업법인세에 대한 각국의 과세기준이 상이하게 되면 효율적인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설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조세정책의 상이점을 제거하는 문제가 향후 국제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조세의 문제가 국제기준설정에 이르기까지

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기업 및 해외현지기업들은 조세문제와 이전가격문제에 있어 현지국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 반덤핑과 보조금 문제에 대한 대처 노력

한국의 수출상품이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1992년 현재 32억 달러에 이르는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선진국에 의하여 반덤핑, 긴급 수입제한 제도 등이 남용되어 왔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UR협정에서는 관련 협정을 명료화, 객관화함으로써 남용의 여지를 축소시켰다. 그 내용으로는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단일시장에서 3%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거나 세계전체시장에서 7%미만일 때 반덤핑 제소가 면제되며, 덤핑마진은 정상가격대비 2% 미만일 경우 면제된다. 덤핑마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정상가격의 인정범위 또한 확대하였다.

이로써 한국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 수출을 할 때 항상 말썽을 일으켰던 반덤핑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나은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UR협정에서는 각국이 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폐지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상계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어 향후 산업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8.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

소위 그린 라운드(green round)라 불리는 환경문제를 국가간의 무역과

연계하는 논의는 제품생산기술에 있어 선진국보다 열악한 한국의 기업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줄 것 같다.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환경논쟁은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간의 논쟁에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보호무역론자에게는 환경주의가 보호장벽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환경기준을 다른 후진국들이나 국제환경협정에 적용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기술적으로 뒤진 개발도상국들의 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한국기업이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능한 전략은 선진국으로부터 환경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공정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기업 자체적으로 새로운 대체물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에 대한 저공해 엔진의 개발과 소비절약형 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9. 인적자원 개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계, 설비, 프로그램과 같은 하드웨어의 개발뿐 아니라 인적자원이라는 휴먼웨어의 개발이 중요하다. 세계의 초일류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휴먼웨어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조직력과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인력을 훈련시키는 조직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인력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10. 정보의 확보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에는 UR협정의 파고에 대해 기업내부의 능력을 결집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화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세계화의 환경에서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해외투자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JSBC(Japan Small Business Corporation)와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중소기업단위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정보수집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두, 『보조금, 상계조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 김지홍, 『서비스 교역 자유화와 한국 서비스 부문 발전방향』, KDI정책연구자료 92-09, 1992. 3.
- 경제기획원, 『UR협상 타결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영향 및 대책』, 1994. 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199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총점검』, 1992.
- 성극제, 『표준 및 검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13, 1992. 7.
- 유병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발전방향과 우리의 대응과제: 농산물부문』, KDI정책연구자료 88-09, 1988.
- 박태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현황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0-03, 1990.
- GATT, Draft Final Act, 1991. 12.
- GATT, Trade in Services, 1991. 12.
- 김지홍, 한배선, 『MFA와 한국섬유 무역정책』, KDI 정책연구자료 90-09, 1990.
- 재무부, 『외자도입 관련 규정집』, 1991.
- 채 욱,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02, 1992.

Abstract

World Trade Organization(WTO) Regime and Korea's Strategy

Dr. Ji-Hong Kim

(Visiting Fellow,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The 8th agreement of the GATT system, known as the UR, started in 1986. Being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world economy, it is sure to greatly influence our economy.

Since the Tokyo Round, the second oil shock, the United States' increasing deficit in its trade balance and Japan and NICs' expansion in export intensified the trade discord endangered the GATT system.

Therefore a few industrial countries seeking to improve their balance of payments got together and pursued a new standard through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The UR progressed around 15 agendas which included the interests of both the industrial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basic goal of UR agreement was in tariff reduction and NTBs relax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GATT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serv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tting new standards for the new issues.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UR agreement is more than just the effect of trade creation. It can now establish a stable global trade order.

Improving from the fact that the GATT system was merely and international agreement having not much binding force, the UR founded the WTO which is similar to the UN in trade.

Like the former GATT system the WTO adopts the consensus as its fundamental basis of decision making, but when a mutual agreement is not possible it goes with the majority rule allowing swiftness in its decision making.

About the effect of income and trade creation, the OECD predicts that in 10 years from the adoption of the UR agreement there will be an additional increase of \$ 200 billion and the GATT predicts and annual \$750 billion increase.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which states the opening of the market through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and the reduction of domestic production subsidy and export subsidy, is expected to greatly damage the Korean agriculture and farmers. But the UR will give a boost to the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e bringing up to a sound industry from its protectionism. The short-term policy of the agricultural product negotiation is income compens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where as the long-term policy is the raising of the self generation of the agriculture through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export subsidy and domestic production subsidy are prescribed as prohibited subsidy. Therefore they must be changed to actionable subsidy or non-actionable subsidy and must be gradually reduced.

The UR service negotiation is not yet agreed upon, and it was decided to continue with the agreement protocol negotiation and the mutual allowance negotiation.

The accounting and taxation service must participate in the qualification mutual allowance negotiation in order to extend its business abroad, and the construction service, distribution service, tourism service, and financial service must all start restructuring.

If a corporation is to be prepare for the WTO system it must

globalize and focus its business. It must also improve its distribution channel, aggressively participate in strategic alliance and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 taxation and transfer price, and much more.